[세금상식]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국세청, 2007. 4.)

2007년 4월 20일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소득세 분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구 분	소득공제 내용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주민세·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증여세 분야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세 분야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기타 세제 혜택

구 분	세제 혜택
징수 유예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기부금공제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제작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